

1. 개정 이유

-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 및 협의·승인,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「수산자원관리법」이 개정*('22.6.10. 공포, 12.11. 시행)됨에 따라

*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, 사전·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부령에 정함

⇒ 따라서, 법률이 위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·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

- 또한, 현행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이 넓치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품종 확대 등 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·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마련
(안 제24조의2 신설)

- (사전·사후영향조사)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·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,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및 행위의 범위, 구체적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*

* '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·사후영향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' 고시 제정 예정

나.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 확대의 유연성 확보(안 제25조의3 개정)

○ (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) 현행 방류종자 인증 대상이 넓치로 한정*하였으나 품종 확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함**

* 그간 방류종자인증제 품종 확대 시마다 매번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해야 하는 등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 및 관리 곤란

** 방류 대상 품종 중 인증 대상 품종을 선정하고 운영방안 마련('23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·사후영향조사) ① 법 제4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·단체·협회 등을 포함한다)은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공어초, 자연석 등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산자원조성행위를 하려는 경우,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결과에 포함해야 한다.

1. 대상해역의 조성 대상면적 및 위치좌표
2.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(어업권현황, 어업소득현황,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등)
3. 대상해역의 해양환경조사(해양물리, 수질 등) 결과
4. 수산자원량 추정결과
5. 대상해역의 해저지형조사
6. 대상해역 해저지반(퇴적물)의 구성 및 분류, 지반지지력 조사

② 법 제4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설치 또는 수산자원조성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완료한 날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결과에 포함해야 한다.

1. 대상해역의 조성면적 및 위치좌표
2.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(어업권현황, 어업소득현황,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등)
3. 대상해역의 해양환경조사(해양물리, 수질 등) 결과
4. 수산자원 변동량
5. 대상해역의 해저지형조사를 통한 수심변화
6. 대상해역 해저지반(퇴적물)의 구성변화
7. 대상해역 시설물 설치상태

③ 사전·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및 행위의 범위,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제25조의3 중 “넙치로 한다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법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까지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2(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·사후영향조사) ① 법 제4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·단체·협회 등을 포함한다)은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공어초, 자연석 등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산자원조성행위를 하려는 경우,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결과에 포함해야 한다.</u> <u>1. 대상해역의 조성 대상면적 및 위치좌표</u>

	<u>2.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(어업권현황, 어업소득현황,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등)</u> <u>3. 대상해역의 해양환경조사(해양물리, 수질 등) 결과</u> <u>4. 수산자원량 추정결과</u> <u>5. 대상해역의 해저지형조사</u> <u>6. 대상해역 해저지반(퇴적물)의 구성 및 분류, 지반지지력조사</u> <u>② 법 제4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설치 또는 수산자원조성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완료한 날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결과에 포함해야 한다.</u>
--	---

	<u>1. 대상해역의 조성면적 및 위치좌표</u> <u>2.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(어업권현황, 어업소득현황,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등)</u> <u>3. 대상해역의 해양환경조사(해양물리, 수질 등) 결과</u> <u>4. 수산자원 변동량</u> <u>5. 대상해역의 해저지형조사를 통한 수심변화</u> <u>6. 대상해역 해저지반(퇴적물)의 구성변화</u> <u>7. 대상해역 시설물 설치상태</u> <u>④ 사전·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및 행위의 범위,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--	--

제25조의3(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)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(이하 "방류종자인증"이라 한다)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<u>넙치로 한다.</u>	제25조의3(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) -----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</u>
--	--